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번 호 | 6133 |
|------------|------|

발의연월일 : 2017. 3. 13.

발 의 자 : 홍의락 · 우원식 · 변재일

박 정 · 이개호 · 심재권

박재호 · 정유섭 · 유동수

유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소비자의 소비생활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p> <p>1. ~ 3. (생 략) <u><신 설></u></p> <p>② ~ ④ (생 략)</p> | <p>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u>」</p> <p><u>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u> <u>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자</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